공고제 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02일

효문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지 *철	지 *철 1977-10-12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(연암동)	직권말소 2023-11-02